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31(2021.1.16.), 1916(2021.1.17.) 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

< 완화 불가한 조치 >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 파티룸 집합금지
-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 :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 아 래 -

○ 적용기간 : '21.1.18(월) 0시 ~ '21.1.31(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 대상지역 조정 가능

3.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시·도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 부과로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위생정책과장),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사)대한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세탁업중앙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주무관 **김수영** 행정사무관 **김현정** 건강정책과장 전결 2021. 1. 18.  
**최홍서**

협조자

시행 건강정책과-443 (2021. 1. 18.)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858 팩스번호 044-202-3937 / [yukson98@korea.kr](mailto:yukson98@korea.kr) / 비공개(5)